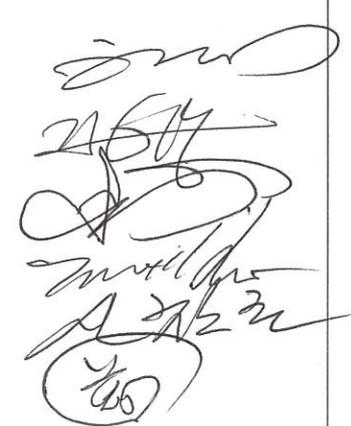


[별지 제1호]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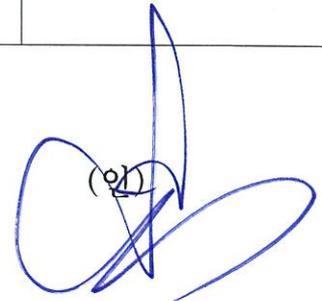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2. 설립목적 : 현행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재무 都市交通委員會 도시교통위원회 미래복지 미래복사	이종욱 김리중 李忠鎬 정재범 신찬호 정강훈		

2023년 5월 18 일

신청인 대표자 : 서울강서구의원 이충현

(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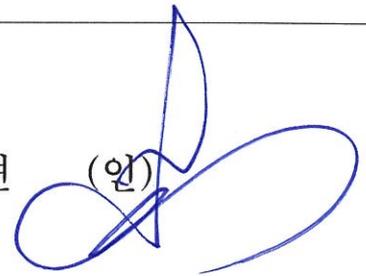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연구내용	주제	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목적	현행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 자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연구활동기간	2023년 5월 일 ~ 2023년 11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액	금 25,300,000 원(금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타		

2023년 5월 18일

신청인 대표자 : 서울강서구의회 이충현 (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첨1)

地方自治制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解決方
案에 관한 연구

2023.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1. 연구단체 개요

가. 연구주제

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나.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장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노출된 문제점, 지방의회관련 법령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등을 적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지방의회관련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안하여 개선,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연구기간: 2023. 5 ~ 11월 (7개월)

라. 연구관련 예산: 총 25,300,000원

- 연구단체활동비 3,300,000원

- 연구용역비 22,000,000원 (부가세포함)

마. 연구활동 방안

연구용역을 체결한 후 연구주제와 관련된 세부 사안에 대하여 연구단체소속의원과 상대방이 수시 전략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된 연구결과를 연구단체가 의회에 보고함.

2. 세부 연구 항목

- 가.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
- 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산하기관포함)간 소송 등에 관하여
 - 참조: 지방자치법 제165조
- 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이 의무) 에 관하여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6조 수의계약에 관하여
- 마.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관하여
- 바. 지방계약법 제25조(단가계약)에 관하여
- 사. 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에 관하여
- 아.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하여
- 자. 지방자치법 제87조(청원의 심사, 처리)에 관하여
- 차.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관하여
- 카. 지방자치법 제 98조(징계의 사유), 제99조(징계의 요구)에 관하여
- 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관하여
 - 광역의회 조례를 통해 기초의회로 처리권한 위임의 문제 포함
- 파.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에 관하여

하.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및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절차 등)에 관하여

거.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너.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에 관하여

3. 연구활동방안 및 일정

가. 연구활동 방안

- 각 연구참여의원들이 세부 연구항목 중 각 관심있는 항목을 결정하고, 결정항목에 대하여 기초자료수집, 전문가 의견청취, 세미나 등을 통한 1차 토론 후 연구용역기관(단체, 전문가)과 수 차례 2차 토론을 거쳐 최종 연구결과를 확정하여 책자발간, 의회에 보고 및 정부, 국회 등에 건의

나. 연구활동 일정

항 목	일정
팀구성, 연구주제 선정 (사전단계)	2023. 4 ~ 5
연구단체등록, 연구계획작성제출	2023. 5
의회 운영위, 본회의 의결	2023. 6
용역계약체결, 연구활동개시	2023. 6
연구팀원 세미나 (세부연구분야 결정)	2023. 7
연구팀, 용역사 합동 세미나	2023. 9
중간 연구결과 합동회의	2023. 9~ 10
연구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보고 (예산정산 포함)	2023. 11

4. 예산 산출내용

(단위: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연구용역비	22,000	용역비(VAT포함)	계약서 별도 제출
회의비	700	월 1회(5~11월) 7회	
연구활동비	2,500	자료수집, 회의장임차, 세미나 1회(1박) 지방자치전문가 강의, 교통비 등	
기타 잡비	100		
합계	25,300		*사후 정산예정